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2. 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2. 10.

운영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발 의 자: 조복희 의원 외 8명(조복희,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홍복조)
- 발의일자: 2022. 1. 26.
- 회부일자: 2022. 1. 27.
- 검토기간: 2022. 1. 28. ~ 2. 4.

###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수당 및 여비(안 제2조 및 제3조)

###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및 제48조
  - 2021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2. 1. 26. ~ 2022. 2. 7.)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조례안 제2조의 시험수당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집행기준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을 준용도록 규정하였고,
- 조례안 제3조의 여비는 외부 출장에 따른 시험관계자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등】

###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군·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⑦ (생략)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 ⑤ 시험위원 ·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 · 시험관리관 · 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2021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2021. 2.**



## 2021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자금기준(원)	비고	
문 제 을 계	객관식(3차형)	문제당	55,000		
	객관식(4차형)	"	50,000		
	주관식	소문제당	40,000		
	학제 통합논술시험	분야별	100,000		
		합숙	1일/1인	300,000	
	기본교재비	일반	문제당	5,000	
		PSAT	"	10,000	
	면접문제	대문제	심화(A4 10매 초과)	"	
			기본(A4 5~10매)	"	
		중문제(A4 2~5매)	"	80,000	
		소문제(A4 1매 이하)	"	40,000	
	면접문제 합숙출제	교수, 공무원3급 이상	1일/1인	300,000	
		공무원 4급 이상	"	200,000	
		공무원 5급 이하	"	150,000	
	문제검토회의	교수	전일/1인	200,000	
			반일/1인	100,000	
		제작자	전일/1인	70,000	
			반일/1인	35,000	
문 제 심 사 선 정	주·객관식	합숙(1박이상)	1과목	1일/1인	300,000
			추가선정	1일/1인	100,000
		비합숙	전일	200,000	10문제 이상
			반일	150,000	
	감수위원	외부위원	1일/1인	300,000	
		제작자	"	200,000	
	운문위원	교수	1일/1인	300,000	
		기타	"	165,000	
	면접문제 합숙심사선정	교수, 공무원3급 이상	1일/1인	300,000	
		공무원 4급 이상	"	200,000	
		공무원 5급 이하	"	150,000	
	사전심사		1일/1인	200,000	
	문제유형개발회의		"	200,000	
	정답 화 정	대면회의	1회/1인	200,000	
		서면심의	"	150,000	

구 분		단 위	자금기준(원)	비고
문제 제작	교 수	1일/1인	200,000	
	교사	*	150,000	
	기타	*	70,000	
	추가검토	*	25,000	10문제 이상
편집 기타	첨자문제 편집	1일/1인	180,000	
	간호요원(합숙)	*	100,000	
출재관리	합숙	*	90,000	
시험 증사	시험장 책임관(사전총장)		1일/1인	20,000
	시험장 준비	휴일	1일/1인	75,000
		평일	*	50,000
	시험증사자	휴일	반일	60,000
			전일	90,000
		평일	반일	40,000
			전일	60,000
	시험증사자 시간연장 추가수당	정규시간	1일/1인	10,000
		1.5배 시간연장	*	30,000
		1.7배 시간연장	*	40,000
		기타 재관석 시험 (8급공체 1차시험일자와인제7급 제외)	*	20,000
서류 전형 심사 및 면접 수당	5급이상 제용시험 (공체, 경체 등)	제작자 (공무원)	반일	150,000
			전일	250,000
		외부 전문가	반일	200,000
			전일	300,000
	6급이하 제용시험 (공체, 경체 등)	제작자 (공무원)	반일	150,000
			전일	200,000
		외부 전문가	반일	200,000
			전일	300,000
	외화액 평가 수당		1일/1인	300,000

- ※ 면접시험이 정규근무 종료시간(18:00)을 2시간이상 초과하여 진행될 경우 사전결의에 의해 면접위원에 대한 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
-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전담인력, 전문 간호인력을 외부에서 지원받기 위해 필요시 시중 노임단가 지급
- ※ 감염병 확진 응시자를 관리·감독하는 시험장 증사자에 대해 시험증사 수당의 1배 범위에서 가산수당 지급 가능

## 일용인부임 등 집행기준

구 分		단 위	차급기준(원)	비 고
시험장 인부임	공 품 (1실기준)	1명 ~ 60명	22,000	
		61명 ~ 100명	45,000	
		101명 이상	60,000	
시험 관 랜 인부임	공 품	인터넷원서접수, 답안지정리 및 제출지원 등	71,000	
국 가 고 시 센 터 인부임	합숙	편집장	1일/1인	100,000
		일러스트레이터	•	100,000
		숙련	•	80,000
		미숙련	•	71,000
		추가편집	•	25,000
	생활	취사반장	1일/1인	140,000
		청소반장	•	120,000
		취사·청소(숙련)	•	110,000
		취사·청소(미숙련)	•	100,000
		편집	1일/1인	71,000
	비합숙	생활	•	71,000
		취사·청소	•	71,000
시험장 운영비	서류전형시험		1개교 당	200,000
	필기 시험	(시험과목) PSAT		
	(시험과목) 그외		•	100,000
	면접시험			
시험장 임차료	공 품	1명 ~ 60명 (냉·난방비포함)	15,000 (21,000)	면접시험장 임차료 별도 (냉·난방비는 한월기준임, 전일은 2배지급)
		61명 ~ 100명 (냉·난방비포함)	20,000 (29,000)	
		101명 이상 (냉·난방비포함)	30,000 (42,000)	

## 시험증사자 배정기준

구 분		단 위	배정기준	비 고
시 험 관理관	공 통	1실 ~ 10실	13명 이내	
		11실 ~ 20실	19명 이내	
		21실 ~ 35실	25명 이내	
		36실 이상	31명 이내	
시 험 감독관	공 통	1명 ~ 35명	2명	
		36명 ~ 70명	3명	
		71명 ~ 100명	4명	
		101명 이상	5명	

※ 시험 중 화장실 전면허용 시험장은 충별 전담 시험관리관 2~4명 추가 배정 가능

- 충별 전담 시험관리관 배정기준은 동별로 각각 적용

(적용예시: 2개동 3개층씩 사용하는 경우 6개층으로 적용)

※ 감염병 확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시험관리관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각 시험  
장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관리관 추가 배정 가능